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12.5.(월)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12.5.(월) 11:00
담당 부서 <총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책임자	과 장 이형민 (043-719-9100)
		담당자	연구관 이수연 (043-719-9130)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7950)
		담당자	조사관 김희경 (043-719-7963)
담당 부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박숙경 (02-361-5720)
		담당자	조사관 김태영 (02-361-5721)

원숭이두창 국내 3번째 환자의 접촉자 감시 종료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2월 5일 0시 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의 접촉자 감시를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 역학조사를 통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고위험군 7명, 중위험군 9명, 저위험군 20명으로 분류되었으며 노출수준에 따라 21일간 능동 및 수동 감시를 시행하였다.
- 지난 11월 22일 고위험군 접촉자 1명*이 능동 감시 중 확진되었으며 이외 다른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감시기간** 중 없었다고 밝혔다.
- * 3번째 확진자의 검체 채취 중 주사바늘에 찔린 의료진으로 현재 격리입원치료 중이며 상태 양호
- ** 확진자와의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21일 동안 감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접촉자와 국민들,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 4번째 확진환자의 완치와 향후 추가 유입 가능 사례들의 조기 발견 및 국내 추가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아울러, 향후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발생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 원숭이두창 바로 알기 → 국내 발생현황

- <붙임> 1. 확진 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3. 원숭이두창 질병개요
4.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국문)
5.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영문)

붙임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12.30 시행)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개원칙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

-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④ 공개 범위

-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함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주의사항

- 상호명 및 소재지 등 공개 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 시·도 및 시·군·구 등 관련 상호기관 간 재확인

붙임 2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규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 3 원숭이두창 질병개요

구분	내용
개요	- 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희귀질환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병원체 특성	- Poxviridae과 Orthopoxvirus 중 하나로 이중 가닥 DNA바이러스 - DNA 바이러스 특성 상 변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됨 - 바이러스의 독성 변화는 중앙아프리카에서 분리된 균주에서 관찰되었으며, 서아프리카의 균주보다 독성이 더 높음
잠복기	5~21일(보통 6-13일)
전파경로	-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병원소	감염된 야생동물(원숭이, 다람쥐, 감비아 자이언트 쥐 등) 등
치명률	-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6%으로 보고 2022년 5월 이후 유행중인 비풍토병국가 치명률은 1% 미만(서아프리카주)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중앙아프리카주(clade 1형)의 치명률은 약 10%
임상증상	- 약 2-4주 지속, 대체로 경증이나 면역저하자 등에서 일부 중증 보고 -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하기도 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남 * '22년 비풍토병 국가 유행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거나 항문궤양, 구강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음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진행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 가능
진단	- 검체(혈액, 피부병변조직, 피부병변액, 가피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
치료	- 대부분 자연회복, 대증치료(국내 상용화된 특이치료제 없음),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치료 * 17개 시도 지정병원에 배포된 테코비리마트 활용 가능
예방	2세대 두창백신은 원숭이두창에도 약 88%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세대 두창백신은 두창과 원숭이두창 모두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되었음 - 원숭이두창 백신 예방접종은 바이러스 노출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 실시 * 확진자와의 접촉 강도 높은 중위험 이상 밀접접촉자와 확진환자 진료 의료진 등

붙임 4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

2022. 7. 12.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

대국민용



원숭이두창 예방수칙

- ✓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
-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접촉 삼가
-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 주의
-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원숭이두창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원숭이두창 평가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2022. 7. 12.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



발생지역 방문자용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 방문 전, 원숭이두창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 등 접촉 삼가
- ✓ 동물사체 및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 삼가
 -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과 접촉 삼가
 -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삼가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상담 문의



원숭이두창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원숭이두창 평가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붙임 5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영문)

2022. 8. 24.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Monkeypox Prevention Guidelines



Monkeypox prevention steps

- ✓ Practice good personal hygiene, including washing your hands
 - *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regularly or use an alcohol-based hand sanitizer after contact with a person with suspected monkeypox
- ✓ Keep contaminated hands away from the mucous membranes of the eyes, nose and mouth
- ✓ Avoid direct contact with skin lesions(incl. a rash or scabs) on a person with suspected monkeypox
- ✓ Avoid contact with objects and materials(incl. bedding, towels, clothing, or a bathroom sink) that a person with suspected monkeypox has used
- ✓ Wear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hen you unavoidably have come in contact with a person with suspected monkeypox
- ✓ Beware of direct contact with sick or dead animals and items used
- ✓ Do not go near wild or companion animals imported from west and central Africa

What to do if you develop suspected symptoms of monkeypox

- ✓ Immediately report suspected symptoms to a public health center and follow advice
- ✓ Avoid contact with people including those who you live with until you've been told what to do
 - * Do not share towels, cups or bedding, and isolate at home if possible
- ✓ Wash hands frequently with soap and water and u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limit spread to family members and people you live with
 - * Wear long sleeves and pants to cover skin lesions, a well-fitting mask and disposable gloves, etc.
- ✓ Separately manage disposal of personal waste and bedding
 - * If you are confirmed, personal waste should be kept separate from other waste and discarded in disposable rubbish bags
 - You should launder your clothes and bedding separately from those of other members of the household
- ✓ Avoid contact with animals including companion ones

Please call the **KDCA call center(at 1339)** for advice if you develop suspected symptoms of monkeypox, such as fever or a rash

2022. 8. 24.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Monkeypox Prevention Guidelines

for travelers to countries/areas affected by monkeypox



Precautions when traveling to countries/areas affected by monkeypox

- ✓ Learn about monkeypox before traveling to the endemic area
- ✓ Avoid contact with rodents(such as giant-pouched rats or prairie dogs) or non-human primates
- ✓ Avoid handling dead animals and eating undercooked meat sourced from wild animals
- ✓ Avoid contact with a(suspected) monkeypox patient
 - Avoid contact with a person with suspected symptoms(incl. a rash)
 - Avoid contact with objects and materials(incl. bedding, towels, clothing, or a bathroom sink) that a person with suspected symptoms has used



What to do after returning from countries/areas affected by monkeypox

- ✓ On arrival, fill out and submit the health questionnaire to a Korean airport quarantine station officer
- ✓ Self-monitor for the development of symptoms, including fever, for 21 days from the date of arrival
- ✓ Call a public health center for a consultation if you develop suspected symptoms



What to do if you develop suspected symptoms of monkeypox

- ✓ Immediately report suspected symptoms to a public health center and follow advice
- ✓ Avoid contact with people including those who you live with until you've been told what to do
 - * Do not share towels, cups or bedding, and isolate at home if possible
- ✓ Wash hands frequently with soap and water and u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limit spread to family members and people you live with
 - * Wear long sleeves and pants to cover skin lesions, a well-fitting mask and disposable gloves, etc.
- ✓ Separately manage disposal of personal waste and bedding
 - * If you are confirmed, personal waste should be kept separate from other waste and discarded in disposable rubbish bags
 - You should launder your clothes and bedding separately from those of other members of the household
- ✓ Avoid contact with animals including companion ones

- Fill out and submit the health questionnaire when returning
- If you have developed any symptoms, notify a Korean airport quarantine station officer about your symptoms
- If you have develop suspected symptoms of monkeypox, incl. fever or a rash within 21 days after returning from countries/areas affected by monkeypox, call the **KDCA call center (at 1339)** for advice
- If you visit a healthcare provider due to other symptoms, be sure to inform the provider of your travel history